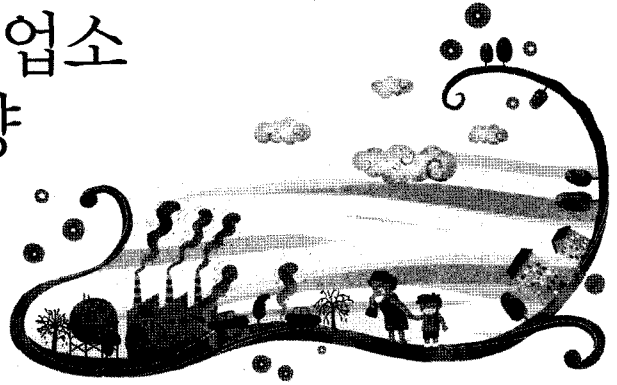


사업장의 환경법령 준수 의지 & 주민의 신고 의식이 함께할 때
환경국가로 업그레이드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감시 정책 방향



그간의 배출업소 환경감시 정책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즉 배출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허가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사전검토와 심사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이나 대기로 배출되어 우리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이 배출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적정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폐수 방류구나 공장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상시 확인하는 TMS(원격감시체계)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업무는 「환경보전법」 제정 당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다가 1984년 환경청에 중앙지도점검반이 설치되면서 중앙정부가 감시업무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 환경청에 지방환경관서가 설치되면서 공단 내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은 중앙정부가, 그 외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점검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관리체계가 실시되었다가 2002년 10월부터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환경부는 4대강 환경감시단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과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는 점검대상 배출업소를 그간의 위반내용에 따라 청색, 녹색, 적색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점검의 체계와 방법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2002년 10월 환경부가 훈령으로 제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양재문 |

환경부 환경감시팀장 기술서기관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서기관(05)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장(10~)

tel. 02-2110-7906 | jmyang@me.go.kr

국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도·점검 대상은 2009년 12월 기준 약 91,710개소이며 이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42,534개소, 폐수배출시설은 49,176개소이다. 이러한 배출시설을 최소한 연간 1회 이상, 적색업소의 경우는 연간 3~4회씩 점검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건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배출업소 환경감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배출업소 환경감시기능의 진화

따라서 환경부는 2004년 9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개정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보다 스스로 환경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점검기관에 제출하면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여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규제에 성실히 따르는 업체에게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점검기관은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자율점검업소는 전국적으로 12,711개소가 지정되어 전체 지도·점검 대상 배출업소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오염 부하량이 큰 대형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상시 감시될 수 있도록 대기의 경우는 1~3종 배출업소, 수질의 경우는 1~2종 배출업소에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기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515개 업체 1,336개의 굴뚝에 먼지, SO₂ 등을 상시 측정하는 TMS가 설치·운영중이고 수질의 경우는 214개 폐수배출업소에 pH, COD(또는 BOD), SS 등을 측정하는 TMS가 설치·운영되는 등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은 그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감시인력의 효율적 이용과 상시감시활동의 전개를 위하여 제도적이나 기능적으로 많은 발전과 보완과정을 거쳐 왔다.

앞으로의 환경감시 정책 방향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환경감시활동과 오염물질 처리 등 환경기술의 발전, 배출업소의 환경법령 준수 의식 제고, 지역주민의 신고 의식 강화 등으로 예전과 같이 대낮에 방지시설을 일부러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다던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배출업소 직원의 관리 소홀 또는 역량 부족으로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되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수질오염사고 등의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밤중이나 강우시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 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창고 등에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놓고 특정시간에만 가동하는 지능형 환경사범과 환경법령 위반시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 반복적으로 오염행위를 일삼는 환경사범은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점검 방식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우며 별도의 특별단속 내지 기획수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환경청(US.EPA) 내에 법집행·준수국(OECA)을 두고 환경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범죄수사과(CID) 등을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도 연방정부 내에 환경범죄에 관한 수색·체포 권한이 부여된 조사관(Inspector)과 수사관(Investigator)으로 구성된 환경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환경범죄는 범죄적발이 철저할수록, 처벌이 엄중할수록 또한 처벌이 신속할수록 그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행위가 단순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범죄행위로 인식하고 대처하여 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문제는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행정부서의 행정적 규제사안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낙동강 폐놀 사건과 같은 몇 차례의 대형 환경오염사고를 통하여 환경오염행위가 중요한 범죄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서는 환경위반 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상적인 환경감시와 지도·점검 업무와는 구별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능화, 고질화된 환경범죄와 광역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환경특별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점검기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TMS와 같은 상시감시체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배출업소인 기업체의 환경보전의식과 자율관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환경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배출업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지도·점검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기업 본래의 목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의식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을 유발하거나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함께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환경감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681개의 민간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있고 54,569명의 지역 주민 등이 여기에서 민간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 감시단을 포함한 민간의 환경감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의 경우 현재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동 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만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련 법률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의 국회 통과시 포상금 지급대상을 대통령령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감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도·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법령 준수의지와 환경오염행위 목적 즉시 이를 신고하는 주민의 신고의식이 합쳐져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염행위를 근절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